참여자 선발기준표

□ 노인공익활동사업

번호	고려요소	배점항목		배점	득점	비 고
합 계				100(115)		
가	소득수준 (소득 인정액)	단독 가구	0원	55		-
			0원 초과~5만원 이하	50		
			5만원 초과~10만원 이하	45		
			10만원 초과~15만원 이하	40		
			15만원 초과~20만원 이하	35		
			20만원 초과~25만원 이하	25		
			25만원 초과~30만원 이하	15		
			30만원 초과~35만원 이하	10		
			35만원 초과~40만원 이하	5		
			40만원 초과~60만원 이하	0		
			60만원 초과~80만원 이하	-5		
			80만원 초과~120만원 이하	-10		
			120만원 초과~160만원 이하	-15		
			160만원 초과~200만원 이하	-20		
			200만원 초과*	-30		
		부부 가구	0원	55		-
			0원 초과~10만원 이하	50		
			10만원 초과~20만원 이하	45		
			20만원 초과~30만원 이하	40		
			30만원 초과~40만원 이하	35		
			40만원 초과~50만원 이하	25		
			50만원 초과~60만원 이하	15		
			60만원 초과~70만원 이하	10		
			70만원 초과~80만원 이하	5		
			80만원 초과~110만원 이하	0		
			110만원 초과~150만원 이하	-5		
			150만원 초과~200만원 이하	-10		
			200만원 초과~250만원 이하	-15		
			250만원 초과~300만원 이하	-20		
			300만원 초과*	-30		
		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		0		*기초연금 미수급자이면서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인 경우 일괄 0점 부여
		60~64세	차상위 계층 해당	60		*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해당 여부를 확인.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불가 *다만, 참여자 선발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,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 중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
			해당없음 (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불가)	0		

번호	고려요소	배점항목		배점	득점	비 고
합 계				100(115)		
나	세대 구성	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		5		*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<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> ①(노부모)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(손자녀)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(조손가구에 한함) ③(장애인) 참여신청자가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④(노부모 및 배우자 외 민법상 가족) 「민법」 제779조의 가족(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) 중 65세 이상인 자가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인 경우. 단, 직계혈족의 배우자·배우자의 직계혈족·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여야 함 ⑤(치매환자 가족) 참여신청자가 치매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※ 주민등록기준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노인부부로 배점하되, ③,⑤에 해당하는 경우 5점 부여
		노인독신가구		3		
		노인부부가구(2명)		1		
		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		0		
		기타 (가족이 아닌 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)		0		
다	활동 역량	신체 활동 능력	양호 / 미흡	20		*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보행속도, 균형감, 하지근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
				16		
				12		
				8		
				4		
				0		*지팡이 및 실버카트 등 보행 보조도구 사용
		의사 소통 능력	양호 / 미흡	20		*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, 듣기 및 의사소통이 원활한지를 보고 판단
				16		
				12		
				8		
				4		
				0		
라	신규참여 여부(가점)	신규 해당		10		*'26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
		해당없음		0		
마	폐지수집 노인(가점)	폐지수집 노인		5		*'24년 이후 지자체에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명단에 포함된 폐지노인 기준, 수행기관에서 자체 발굴한 경우 지자체 보고 후 전수조사 명단에 등록하여 가점 부여
		해당없음		0		

※ 활동역량 선발점수 중 신체활동능력, 의사소통능력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0점인 경우, 참여제한 가능
※ 동점자 발생 시,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(1순위, 활동역량 > 2순위, 세대구성 > 3순위, 소득인정액)
※ 치매환자 확인가능 서류: 장기요양 인정서·장기요양 5등급(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) 또는 인지지원등급(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) 또는 치매진단서(치매질병분류코드* 필수) * 치매(F00), 혈관성 치매(F1),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(F02), 상세불명의 치매(F03), 알츠하이머병(G30)